

[일련번호: 1]

# 감 사 위 원 회

## 기 관 경 고

제 목 기관 운영·관리 소홀

기 관 명 군산시

내 용

### 1. 업무개요

군산시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채용,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인사행정 업무와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투자진흥기금<sup>1)</sup> 운용, 지방하천공사 등 지역산업에 관한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또는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는 경고 등 처분<sup>2)</sup>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

1)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목적: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

2)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따라서 군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법규를 준수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기관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 3.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군산시의 인사행정과 지역산업 추진현황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법규위반 및 직무태만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먼저 군산시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소속공무원의 범죄사건 중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반드시 요구했어야 함에도, 징계의결요구 대상자인 총 8명에 대해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sup>3)</sup>한 후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내부종결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중 2명은 징계시효가 만료<sup>4)</sup>됨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도 할 수 없게 되었다.(일련번호 3번)

또한 군산시 소속공무원에 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적가점 및 자격증가점 부여대상자가 아닌 총 20명에게 가점을 부여하였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과 달리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 어학시험 점수를 응시요건으로 제시하거나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법령 등에 적합한 다수의 채용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였다.(일련번호 2, 4번)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기한 내 미 제출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3) 총 8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에 해당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주지검군사지청에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통보되었음에도 군산시는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함

4) 감사처분 시점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2024. 3월까지 1,377건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산시는 실적보고서 제출을 독려하지 않고 내버려둠에 따라 이 중 147건, 49,675톤의 경우 건설폐기물이 실제로 정상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건설폐기물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일련번호 6번)

또한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등 기금자산의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했어야 함에도 2020년 1월부터 2024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적게는 103천 원에서 많게는 20,547,815천 원에 달하는 기금 유희자금을 이율이 더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최소 약 458,554천 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하였다.(일련번호 9번)

그리고 &&& 유역의 홍수분담을 통한 침수피해 및 재해예방을 위한 “\*\*\*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물량이 중복되는 등 과다하게 공사비가 반영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설계서 내용의 누락·오류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 반영된 순성토 운반 공사비 205,524천 원,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공사비 337,612천 원 등 총 790,859<sup>5)</sup>천 원을 조정(감액) 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검토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둠에 따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일련번호 10번)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동산 등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5) 총 790,859천 원 : 불필요한 호안공 공사비 72,648천 원, 중복반영된 순성토 운반 공사비 205,524천 원,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공사비 337,612천 원, 순환골재 미반영 공사비 175,075천 원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군산시는 2019. 9. 24. 사회복지법인 '###'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는 이유로 도지사로부터 그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처분도 되지 않은 기본재산에 대한 정관변경을 같은 해 10. 01. 인가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일련번호 16번)

그 결과 군산시는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채용, 징계의결요구 등의 업무에 대해 법규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였고, 지역산업 등에 관한 업무추진 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는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추진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